규정류(제정·개정)입안서

1. 규정류명 : 교수업적평가규정

2. 규정류(제정·개정)사유 : 산학협력영역의 정의에 지산학관민연 협력 기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명시하고,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개정(국고지원사업 연계 활동의 산학협력영역 반영, 교육혁신 부문 명칭, 연구영역 상한 초과 실적의 특별가산)에 따라 평가영역 정의를 정비하고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며,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집단평가 점수 적용 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
 - 제4조(평가의 영역) 정비
 1) 교육영역에 「교육혁신」 명시(제1호)
 2) 산학협력영역의 협력 상대를 산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사회·시민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지산학관민연)으로 확장하고, 지산학관민연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활동과 국고지원사업 연계 교육·혁신활동 실적을 포함(제2호)
 3) 특별가산점에 연구영역 상한점수 초과 실적을 추가(제5호), 세부 배점·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 제5조(평가방법) 제1항제2호에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집단평가 점수의 적용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단서 신설
 - 부칙: 시행일(공포일), 적용례(제4조 개정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부터 적용)

4.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 공포일부터 시행(개정된 평가영역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부터 적용)

5.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동시 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해당 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 대비표

 마. 규정류(제정·개정)안 전문

2026년 10월 1일

소관부서 : 교무처 (인)

관련부서 :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교수업적평가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3조(평가의 주기) (생략)	**제1조(목적)** ~ 제3조(평가의 주기) (현행과 같음)	
제2장 업적평가	**제2장 업적평가**	
제4조(평가의 영역)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해외학위에 대한 검증은 학위검증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교육영역 : 교육영역은 강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실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2. 산학협력영역 : 산학협력영역은 본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교육 및 창업, 취업, 산업체 및 지역연계 실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3. ~ 4. (생략) 5. 특별영역 : 특별가산점은 수상실적과 발전기금 기부·유치 실적을 말하며 특별감점은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원의 복무위반 등 인사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12. 1.)	**제4조(평가의 영역)**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해외학위에 대한 검증은 학위검증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교육영역 : 교육영역은 강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학생지도 실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개정 2026.00.00.) 2. 산학협력영역 : 산학협력영역은 본 대학과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사회·시민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하 “지산학관민연”이라 한다) 간의 협력관계 증진과 지산학관민연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교육 및 창업, 취업, 산업체 및 지역연계, 국고지원사업(앵커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연계 교육·혁신활동 실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개정 2026.00.00.) 3. ~ 4. (현행과 같음) 5. 특별영역 : 특별가산점은 수상실적, 발전기금 기부·유치 실적 및 연구영역 상한	- 지산학관민연(지역사회·산업체·대학·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시민단체·연구기관) 협력을 산학협력영역의 정의에 명시하여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교원 활동의 평가 근거 마련 - 시행규칙 개정사항(교육혁신부문 명칭, 국고지원사업 연계 부문 G1~G4 신설, 지역연계 협력 주체 확장, 연구영역 상한 초과분 특별가산)의 상위 규정 근거 정비 - 영역 명칭은 현행(산학협력영역)을 유지하여 제1조(목적)와의 용어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의만 확장. 세부 배점·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점수 초과 실적을 말하며 특별감점은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원의 복무위반 등 인사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12. 1.), (개정 2026.00.00.)	
제5조(평가방법) ① (생략) 1. (생략) 2. 집단평가 :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이 소속된 학과에 대한 평가로, 집단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소속 교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생략) **제6조(업적인정 및 세부평가기준)** ~ 제23조(기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집단평가 :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이 소속된 학과에 대한 평가로, 집단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 소속 교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집단평가 점수의 적용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업적인정 및 세부평가기준)** ~ 제23조(기타)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2026년 10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 제5조: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교양과·자유전공 등)에 대한 집단평가 점수의 적용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신설(시행규칙 제4조③: 항목별 학과 점수 평균의 50%). 집단평가를 「소속된 학과에 대한 평가」로 정의한 현행 규정과 시행규칙 특례의 정합 확보 - 부칙: 공포일 시행, 제4조 개정규정은 시행규칙과 같이 2027학년도 평가주기부터 적용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산학협력·연구·봉사활동에 대한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수 개인의 능력개발 촉진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본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대상) ① 평가의 대상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전원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비전임교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대상 및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범위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기간 중 안식학기는 평가기간에 포함시키되 학기별 평가가 이루어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안식학기를 제외시킨다.
④ 직위해제,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직위해제, 정직 등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총장이 이를 결정한다.
⑥ 해당 연도 임용된 신임교원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64세 이상인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평가를 원할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의 주기) 평가주기는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그 적용기간은 매 학년도 10월 16일부터 익년 10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임교원의 경우는 임용 당해년도에 한하여 3월 1일부터 교수업적평가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2장 업적평가

제4조(평가의 영역)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해외학위에 대한 검증은 학위검증위원회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교육영역 : 교육영역은 강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혁신, 학생지도 실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개정 2026.00.00.)
2. 산학협력영역 : 산학협력영역은 본 대학과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사회·시민단체, 연구기관, 다른 대학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하 "지산학관민연"이라 한다) 간의 협력관계 증진과 지산학관민연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산학협력연구, 산학협력교육 및 창업, 취업, 산업체 및 지역연계, 국고지원사업(앵커사업·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 연계 교육·혁신활동 실적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개정 2026.00.00.)
3. 연구영역 : 각 교원의 최근 임용 당시 전공에 해당하는 논문, 저서, 학술발표, 문학·예체능 등의 연구 및 창작활동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4.12. 1.)
4. 봉사 및 기타 영역 : 봉사 및 기타 영역은 교원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학내와 사회에 제공·기여하는 일체의 활동 실적으로, 학교·학과의 학사참여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 1.)
5. 특별영역 : 특별가산점은 수상실적, 발전기금 기부·유치 실적 및 연구영역 상한점수 초과 실적을 말하며 특별감점은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원의 복무위반 등 인사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12. 1.), (개정 2026.00.00.)

제5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개별평가와 집단평가로 구성되며 집단평가의 점수는 집단 소속 교원 개개인의 점수로 환산한다.

1. 개별평가 :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
2. 집단평가 : 업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이 소속된 학과에 대한 평가로, 집단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과소속 교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학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집단평

가 점수의 적용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00.00.)

② 평가는 실적평가와 종합평가를 병행한다.

1. 실적평가는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 및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2. 종합평가는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실적평가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수를 포함한다. 다만, 각 평가영역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때도 계량화된 점수를 사용한다.

제6조(업적인정 및 세부평가기준) ①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업적은 다음년도 업적평가 때 확인하여 다음년도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처리된 인사·급여 등의 결정사항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 대상기간 중 발행(발간)예정인 업적은 예정증명서로 미리 평가할 수 있으나,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처리된 인사에도 소급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중복인정의 금지 등) ① 중복된 업적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중복된 업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내용의 논문, 저서,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활동, 특허, 전시회 출품 및 예술품 제작 등 연구업적
2. 동일한 업적이 서로 다른 평가항목에 중복하여 제출된 업적

③ '표절된 연구업적'은 본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제2항제2호의 경우, 중복된 업적은 당해교원에게 유리한 업적을 적용한다.

⑥ 동일한 연구업적물에 대하여 승급과 재임용, 승급과 승진, 승진과 재임용, 승진과 재계약 등 서로 다른 목적으로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목적으로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중복인정 금지의 예외) 연구업적물로 이미 인정된 업적을 추후 연구업적 평가기준상 상위항목의 유형으로 다시 발표한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인정된 점수를 차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제3장 평가기구 및 평가절차

제9조(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장 직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8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직은 교무처장이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⑥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적평가의 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2. 실적평가 부문에 있어서 교수 개인별 업적에 대한 검증·평가, 그 밖에 자료보완 요청 3. 종합평가 실시 4. 교수업적평가 세부사항 조정 5. 업적평가 결과 확인 6. 그 밖에 교수업적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 중 자신에 관한 평가 시에는 그 평가에 참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업적평가를 한 후 평가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2.1.)

제11조(업무지원) 위원회의 업적평가 관련 업무지원은 관련 타 부서와의 협조 하에 교무처가 주관하여 담당한다.

제12조(평가의 절차) ① 평가대상 교수는 매 학년도마다 본인이 작성한 개인별 업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제출한 업적평가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경우 평가대상교수는 매년도 10월 15일까지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얻은 평가결과를 매 학년도 11월 15일 까지 해당교수 개인에게 통보한다.

제13조(증빙자료) ① 연구업적의 엄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 학술지 또는 논문집 원본(대조 후 반환) 및 별쇄본(또는 사본)
2. 학술회의논문 : 프로그램 원본, 논문집 원본(대조 후 반환) 및 별쇄본(또는 사본)
3. 저서 및 특허 : 원본(대조 후 반환) 및 별쇄본(또는 사본)
4. 창작물· 발표회· 전시회 : 프로그램 원본 및 관계자료(녹화테입, 슬라이드, 악보, 관련문서 등)
5. 기타 : 관계 증빙자료(상장 원본 및 사본, 연구보고서, 위촉장 원본 및 사본 등)

② 연구업적의 증빙물 중 제1항에 정의한 것과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웹페이지 : 기관 웹사이트 초기화면, 목차 및 업적물 페이지의 프린트물(각각의 경우 프린트본에 해당 페이지의 웹사이트가 명시되어야 함)
2. DISC류(CD, DVD 등) : DISC의 표지 사본(사본 상단에 DISC류임을 표기), 목차 및 업적물의 프린트물

제14조(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 ① 업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업적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참고서류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재심사청구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수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정년보장, 정년트랙으로의 변경, 재임용, 재계약, 승진, 승급 등 교원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한다.

② 업적평가결과 우수교원에게는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관리) ① 교수업적평가 결과 및 실적물 관리는 교무처가 관장한다.

② 업적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업적평가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교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평가결과가 없는 교원에 대한 조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인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삭제>
2. 합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불응한 교원

제5장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허위기재 등에 관한 제재) ① 본인의 업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추후에 허위로 밝혀질 경우 당해 업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인사(人事) 등 모든 조처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 허위기재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혜택은 대학에 전액 반환한다.
③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교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21조(특별가점) 업적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교위를 선양하여 그 업적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및 배점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24.12.1.>

제22조(특별감점) 특별감점은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원의 복무위반 등 인사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 (신설 2024.12.1.)

제2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2015년 10월 16일 이후의 업적은 2016년 평가에 반영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7학년도 평가주기(2026년 10월 16일부터 2027년 10월 15일까지의 실적)부터 적용한다.